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35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 임미애·강준현·권향엽

김남근 • 박지원 • 박해철

박희승 • 안호영 • 임오경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로 예정된 조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폭력 피해 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젠더폭력 사 건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 시 3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젠더폭력 진상조 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살"을 "성폭력·학살"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실종"을 "실종·성폭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① 진실규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사건에 대하

- 여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피해자"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8.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을 공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	제1조(목적)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					
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u>학살</u>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	<u>성폭력·학살</u>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					
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u>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	4				
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					
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 <u>실종</u> 사	실종·				
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u>성폭력</u>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 6. (생략)

② (생략)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신 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 | ②-----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 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5. ·	6.	(현행	기과	같음)
(2)	(혀	햇과	같-	음)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 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및 조사 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 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 성・업무 및 운영, 제2항에 따 른 전담기구의 구성・업무 및

제2	253	<u> </u>	존 시	-フ]	간))	1)-	 	_	 	
-								 	_	 	
_								 	_	 	

<u>년간</u>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① 진실규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건 중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 자(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피 해자"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나 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피해자 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피 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 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 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① (생 략)

②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 ③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신 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 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
 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8.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